

2026

공무원 변호사 행정사
국회 법원 군무원 소방

행정법입문

엠북 법학원

공부혁명!
mbook.kr

- ✦ PDF 전자책
- ✦ 행정법총론 및 행정법각론
- ✦ 법률, 판례, 이론, 해설
- ✦ 2시간 12분 완성

도서명 : 행정법입문

ISBN : 979-11-7393-199-4

발간일 : 2026-02-26

형식 :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4,500원



행정법 입문

제1편 행정법 총론(p3)

제1장 행정법통론(p3)

제2장 행정작용법(p26)

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공개(p58)

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(p65)

제5장 행정구제(p77)

제2편 행정법 각론(p99~129)

제1장 총설(p99)

제2장 국가행정조직법(p101)

제3장 지방자치법(p113)

제4장 공무원법(p120)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편 행정법총론

제1장 행정법통론

제1절 행정

1. 연혁

- 행정의 관념은 역사적으로 성립/발전
-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국가권력을 입법, 사법, 행정으로 분리하면서 성립
- 19세기 시민적 법치국가는 공적 안전, 질서유지
- 20세기 사회적 법치국가는 균등배분, 복리증진

2. 개념

가. 형식적

- 행정기관에 의한 모든 작용
- 입법, 사법 포함

나. 실질적

- 법아래서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
-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
- 현실적, 구체적이고 통일성 가진
- 계속적/형성적 국가활동

(비교) 사법작용은 법의 선언작용

3. 종류

가. 주체

- 국가, 자치, 위임행정(공무위탁사인)

나. 근거법: 공법/사법상 행정

다. 대상: 건축/학교/재무 행정

라. 목적

- 국가목적은 재무, 외무, 군사, 사법 행정
- 사회목적은 질서, 복리, 경찰 행정

마. 내용

- 1) 질서행정은 교통정리, 영업규제, 감염병예방
- 2) 급부행정
 - 공급행정은 교통/통신 시설, 보건/복지 시설 제공
 - 사회보장행정은 공적부조, 사회보험, 사회복지활동
 - 조성행정은 청소년 보호/육성, 지식/기술 제공
- 3) 유도행정은 행정계획, 보조금지급
- 4) 계획행정은 건축계획, 보존계획
- 5) 공과행정은 조세, 공과금 징수/관리
- 6) 조달행정은 공무원 임용, 토지수용

바. 수단

- 권력행정(고권적 행정)은 경찰행정, 조세행정
- 비권력행정은 행정지도, 공법상 계약

사. 상대방에 대한 효과

- 1) 수익적: 허가, 특허
- 2) 침익적: 과세행정, 징집행정
- 3) 복효적: 수익적/침익적 효과 동시 발생

4. 통치행위

가. 개념

-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제4의 국가작용
- 입법/사법/행정과 구별

나. 대통령

- 국가원수 지위에서의 행위(외교행위, 사면)
- 총리임명 등 조직법상 행위
- 법률안 거부, 국민투표회부
- 비상계엄선포, 긴급명령

다. 국회

- 총리/국무위원 해임건의, 의원징계

라. 사법심사 배제

- 예외적 사법심사
- 정치적 법률분쟁
- 국헌문란
- 직접 국민 기본권 침해

마. 한계: 합목적적 구속, 헌법합치, 정의

제2절 행정법

1. 개념

가) 행정권의 조직, 작용, 행정구제에 관한 성문/불문의 국내공법

- 행정 조직/작용/구제법

나) 공법: 행정소송, 공법인, 공익실현 중심

- 이해조절법으로 접근 필요

다) 민주/법치/사회 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 적용

라) **헌법과 행정법**

- **협의의 공법**

- **헌법의 규정과 정신은 행정법 해석의 지침과 기준**

- **헌법은 행정법의 성문법원**

- **헌법에 비해 정치적 변화에 덜 민감**

· 오토마이어 '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존속'

마) 특별행정작용법

- 행정주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일체의 행정활동에 관한 법

- 시대와 국가에 따라 내용다름

· 현대 복지국가는 행정작용 범위 확대

(비교)

- 교육청의 업무용품 구입계약이나 청사의 건설도급계약은 사법의 대상

2. 특징

가) 형식: 성문법주의, 다양성

나) 성질: 재량성, 획일성/강행성, 기술성/수단성, 명령성, 대량성

다) 내용: 행정주체의 우월, 공익추구, 집단성/평등성

라) 행정입법이 많이 행해짐

(비교)

가) 강행법규

- 공서양속에 관한 규정
-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 배제 못함
- 효력규정은 위반시 사법상 효과 부정
- 단속규정 위반시 제재(사법상 효과에는 영향없음)
- 행정법규는 주로 단속법규

나) 임의법규

-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 배제 가능

제3절 행정기본법

1. 개요

-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
- 최초로 행정 실체분야의 단일법전 마련
-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법 원칙과 실체적 사항을 담은 기본법이자 일반법

2. 불문법 영역의 행정의 法 원칙 등 성문법화

- 법치행정/평등/비례의 원칙과 학설/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/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성문화(8~13조)
- 기간 계산 기준 명시(6조)
-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,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

따르도록 하는 등 신/구법 적용기준 규정(14조)

3. 행정의 효율성/통일성 제고

- 인허가의제(24~26조), 과징금(28조, 29조), 이행강제금(31조) 등 개별법에 흩어진 제도의 통일된 기준 마련
-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효력 발생시점 명확화(34조)

4.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

- 행정의 적극적 추진 근거를 명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촉진 (4조)
-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(20조)

5. 국민 권익보호 수단 확대

- 가)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(제척기간)을 5년으로 제한(23조)
- 행정의 신속한 처분 유도 및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
- 나)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 마련(36조)
- 국민이 행정심판/소송 전에도 구제 절차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게 함
- 다) 민/형사상 재심 제도와 유사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행정에 도입(37조)
- 쟁송을 통해 다룰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 변경/취소/철회 신청 가능

제4절 법치행정

1. 개요

가. 행정법의 기본원리

- 법치/민주/복지 행정주의

나. 법치행정

1) 행정기본법

가) 법률우위

-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됨

나) 법률유보

- 국민의 권리제한, 의무부과,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법률 근거 요

2) 개인권리침해시 사법적 구제

3) 법률로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시 행정권은 위임 범위내 행정입법으로 세부사항 정함

다. 법치주의

1) 법언: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

2) 형식적: 대륙법계

- 오토마이어: 법률의 법규창조력, 법률의 우위, 법률의 유보

3) 실질적

- 법의 내용도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장

- 2차대전 이후 형식적 법치주의 반성

- 영미법의 법의 지배원리

2. 법률의 법규창조력

-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법률만 법규 창조, 국민 구속

- 예외는
- 대통령의 긴급명령, 긴급재정/경제명령
- 국회/법원규칙, 행정법의 일반원칙

3. 법률우위의 원칙

- 국회 제정 형식적 법률이 행정권의 모든 활동에 우위
- 행정은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함
- 법률은 헌법, 법률, 법규명령, 행정법의 일반원칙 포함
- 단, 행정규칙 제외
- 위반시 무효/취소, 손해배상청구 가능
- 수익적/침익적 행위 불문,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

4. 법률유보(법률근거)의 원칙

가. 의의

- 의회가 제정한 입법에 근거, 법률수권에 의함
- 예) 조세법률주의
- 법률근거없는 행정활동 금지
-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영업취소 처분시 법률유보 원칙 위배
-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(불문법원은 제외)
- 국민에게 이익주는 행위는 법률근거 불요

나. 현재

- 기본권 제한 형식이 법률 형식일 필요는 없고, 위임입법으로도 제한 가능
- 예산은 법규범이나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 구속(일반 국민은 구속안함)
- 중요사항유보설

· 사인에 영향미치는 본질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규범 필요

제5절 법원

- 법의 존재형식, 인식근거

1. 성문법원

가. 헌법

- 가장 기본적 법원
- 큰 정치적 변화로 개헌시도 기술적 성격이 강한 행정법은 유지

나. 법률

- 2021년 행정기본법 시행으로 단일법전 마련

다. 법규명령

- 법률 등의 위임에 의해 정해짐

라. 행정규칙

- 상급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소속행정기관 등에 대해 가하는 내부규율

마. 자치법규

- 조례, 규칙, 교육규칙
-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내 제정

바. 국제조약/국제법규

- 국제법규 중 국내행정과 관계된 것은 국내행정법의 일부가 됨

2. 불문법원

가. 관습법

- 법률유보원칙상 많지않음
- 성문법 없을 때 보충적 적용
-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관행 인정

나. 판례법

- 선례구속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음

다. 조리(법)

제6절 행정의 법원칙

1. 개요

- 가) 행정기본법 8~13조
 - 법치행정, 평등, 비례, 성실/권한남용금지, 신뢰보호, 부당결부금지
- 나) 행정법해석의 기준, 재판에서 직접 적용, 위반시 위법

2. 평등

가. 9조: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 차별못함

나. 판례: 다음은 평등원칙 위반

- 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1인만 파면, 나머지는 견책
- 선행단체의 사회단체등록신청은 수용하고, 후행단체의 신청은 이유없이 반려

다. 파생원칙: 행정의 자기구속

1) 의의

- 동일사안에 대한 결정에 구속됨
- 국민의 권익보호
- 행정의 탄력적 운영 저해
- 행정청의 선례에 구속되므로 국회 입법원칙과 다름

2) 요건

- 동일한 생활관계
- 의미/목적 동일
- 해당처분청에만 적용
- 행정관행이 적법

3) 판례

- 평등원칙, 신뢰원칙을 근거로 인정

3. 비례의 원칙(과잉금지)

가. 10조: 행정작용은

- 행정목적 달성에 유효/적절, 필요 최소한도
- 국민 이익침해가 공익보다 크지않을 것

나. 개념

- 목적/수단간 **합리적 비례관계**
- 헌법에 근거 둠
- 모든 행정에 적용(가장 일반적 원칙)
- 경찰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법원칙에서 발전
- 위반시 위헌/위법
- 견책으로 족한 데 해임시 비례원칙 위반

다. 내용

- 1) 적합성: **수단은 목적 달성에** 법적/사실상 **적합**
- 2) 필요성: **최소수단**, **최소침해**
- 3) 상당성(협의)
 - **사익침해가 공익상 필요 능가하면 안됨**
 - 필요한 수단 중 상당성있는 수단만 선택

라. 판례: 다음은 비례원칙 위반

- 대중음식점이 1차 위반시 바로 2개월 영업정지
- 형이 미확정인 자에 죄수복 입힘

4.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(11조)

- 행정청은
- 법령등의 의무 성실 수행
- 권한 남용, 권한 범위 넘으면 안됨

5. 신뢰보호의 원칙